

# 법무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## 1. 의결주문

법무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개정이유

- 법무사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응시자의 편의를 제고함

## 3. 주요내용

- 현행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외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도 응시수수료 환불이 가능하도록 함(안 제9조제2항)

## 4. 법무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## 5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## 법무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법무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단서 중 “경우에는”을 “경우와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수험수수료) 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법원행정처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<u>경우에는</u> 법원행정처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.</p>	<p>제9조(수험수수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경우와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</u> ----- ----- -----.</p>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	
연락처	(02) 3480 - 1394